

제 1 절 계약기간

- ① 이용 수급자와의 계약기간은 장기요양인정서 유효기간 범위 내(1년 또는 장기요양인정서 유효기간까지 등)에서 한다.
- ② 등급 변경, 계약기간 종료, 본인부담금의 변경 시 재계약 할 수 있다.
- ③ 노인장기요양등급외자의 경우 계약 당사자의 협의에 의하여 정한다.

제5조(계약목적) 노인성질환 등으로 혼자서 일상생활을 하기 어려운 노인(장기요양 급여수급자)에게 시설급여서비스를 제공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한다.

제6조(월이용료 기타 비용 부담액) 월이용료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및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및 세부사항」에 따른다.

- ① 시설은 산정된 총 급여비용 중에서 본인부담금을 수급자로부터 받고, 본인부담금을 제외한 나머지(공단부담금 및 가산비용 등)를 공단으로 청구하여 지급받는다.
- ② 장기요양급여 범위 외의 식재료비, 아·미용료, 상급침실료 등 비급여비용에 대해서는 계약 당시자의 동의 및 ·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한 금액으로 한다.

1. 입소자와 관련된 상기요양급여 및 비급여서비스 내역에 대하여 알 권리가 있다.
2. 입소자에 대한 요양, 간호, 재활치료에 관한 상세한 내용을 요청할 권리가 있다.
3. 입소자가 쾌적하고 적절한 처우를 받고 있는지 참관할 권리가 있다.
4. 입소자의 처우개선, 불편사항, 건의 사항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② 신원인수인의 의무

1. 입소자에 관한 건강 및 필요한 자료제공의 의무가 있다.
2. 입소자에 대한 월 이용료 등 입소비용 부담 의무가 있다.
3. 인적사항 등 변경 시 즉시 통보 의무가 있다.
4. 장기 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 선정 의무가 있다.
5. 입소자가 병원 입원 시에는 간호 및 간병, 입·퇴소 절차, 비용 등 모든 것에 대한 책임 의무가 있다.
6. 기타 시설생활 규칙이행 의무가 있다.

제 5 절 계약의 해제

제8조(계약의 해제) 당사자 합의하에 입소계약을 해제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대표자(또는 시설장)는 입소자 또는 보호자에게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가. 수급자(보호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시설과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①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② 장기요양급여 범위에 해당하는 서비스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나. 시설은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수급자(보호자)와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① 수급자의 생명이 위독하거나 사망하였을 때

② 계약기간이 만료되었을 때

③ 수급자가 장기요양보험 등급외자로 등급변경이 발생한 경우

④ 수급자의 건강진단 결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대한법률」에 따른 감염병 환자로서 감염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로 판정될 때

⑤ 수급자의 건강상의 이유로 서비스 이용이 어려울 때

⑥ 어르신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

⑦ 2회 이상 이용료를 고의로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하였을 때 1회에 서면 통보를 한 뒤 2회에 전화로 통보를 드린다.

고의성에 대하여는 지자체 및 건강보험공단의 자문을 받아 생계의 어려움이 있는지 확인하여야 하며, 생계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된 경우로 한다.

생계에 어려움이 있을시 기초수급이나 타 방법을 찾아보고, 공단에 사전 신고하여 이에 대하여 자문을 받도록 한다.

⑧ 시설운영에 심각한 지장을 줄 시 먼저 보호자와 상의 하여야 하고 해결이 어려울 시에는 지자체와 건보공단에 자문하여야 한다. 수급자가 아닌 보호자의 문제로 부득이 해지를 하는 경우에는 운영위원회나 건보공단의 자문을 받는다.

⑨ 배회성 치매 또는 폭력성이 심각한 치매로 서비스 제공이 어려울 때

⑩ 10일 이상 입원을 하였을 때. 단, 수급자나 보호자의 요청으로 계약해지를 유보 할 수 있다.

다. 수급자(보호자)는 가항의 계약해지 요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일 또는 계약기간 만료일전에 ‘시설’에 직접 또는 유선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제 4장 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변경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

제 9조(이용료 및 비용 변경에 대한 변경)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이용료를 변경하는 경우 그 변경된 이용료를 지체 없이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안내하여야 한다.

- ① 이용자의 장기요양등급이 변경되었을 때
- ② 이용자의 본인부담금 감경에 의해 본인부담률이 변경되었을 때
- ③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에 고시한 장기요양급여비용이 변경되었을 때
- ④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14조의 비급여비용을 변경 할 때

제10조(이용료등 비용에 대한 변경 절차)

- ① 제9조 1,2,3번 항이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변경 내역을 우편, 전자적 방법으로 통보 후 재계약 없이 적용한다.
- ② 비급여비용은 변경 적용할 전월까지 입소자, 이용자 또는 보호자에게 반드시 통지하여야 한다.
- ③ 비급여비용 변경은 비급여비용 변경계약서를 작성한다.